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
		배포일시	2020. 1. 10(금) 총 9매(본문3)	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김민태 • ☎ (044) 201-4597, 4962	
	건설안전과	담당자	• 과장 한명희, 사무관 현기창, 사무관 장은석 • ☎ (044) 201-3584, 4998	
	철도건설과	담당자	• 과장 임종일, 사무관 임성훈, 사무관 신용섭 • ☎ (044) 201-4782, 3952	
철도시설 공단	건설계획처	담당자	• 처장 최원일, 건설계획부장 한승우 • ☎ (042) 607-3871, 3872	
보 도 일 시		2020년 1월 11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0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,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습니다.

-김현미 장관, 10일 철도 건설현장 찾아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점검
-적정임금제 제도화, 임금직접지급제 개선·확산 등 일자리 지원의지 피력

□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,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, 본격 확산에 나섰다. 특히,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,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김현미 장관은 1.10(금)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 5공구*를 방문하여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.

*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 충남(홍성)에서 경기도(화성 송산)까지 약 90km구간. 주 공정인 아산고가교(L=5.9km)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교량임

□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

위해 「추락사고 방지대책('19.4)」, 「건설 일자리 지원대책('19.11)」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.

- '19.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, 국토부 소속·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,000여 곳에서는 '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.
- 「추락사고 방지대책」('19.4)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('18년, 점검현장의 10% → '19년, 24%),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 (11.8%)으로 감소하여 통계 집계('99년)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었다.

* (건설현장 사망사고) ('17) 506명 → ('18) 485명 → ('19) 428명

□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·안전 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- (임금직접지급제)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, 건설사의 부도·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,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(인센티브)*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.

* 민간건설사가 임금직불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

- (전자카드제)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·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,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·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.

- (기능인등급제와 적정임금제)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,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 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·발표할 계획이다.
- (안전강화) 아울러,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「건설안전 혁신방안」을 발표, 발주자·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.
 -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,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,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,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“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”이라면서,

- “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,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기림 사무관(☎ 4597), 건설안전과 현기창 사무관(☎ 3584), 철도건설과 임성훈 사무관(☎ 47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

□ 공사개요

<아산고가 조감도>



구조물명	연 장	상부형식	비고
아산고가교 (L=5.900km)	육상 : 3.135km 수상 : 2.765km	ED교(110m), 사판교(145m), 곡형트러스교(120m), PSC BOX교(2,760m) 복합트러스교(2,140m), 아치교(625m)	



○ 서해선 제5공구 현황

- 위 치 :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~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일원
- 공사기간 : 2013. 09. 06. ~ 2022. 06. 30.
- 공 사 비 : 464,811백만원(노반 404,866백만원)
- 건설사업관리단 : (주)케이알티씨외 2개사
- 시 공 사 : 대림산업(주)외 6개사

참고 2

「건설 일자리 지원대책」('19.11 발표) 주요 내용

1. 추진배경

- 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」을 발표('17.12)하고 건설근로자 고용·생활안전망 정비 중*이나 아직 근본적 체질개선에는 미흡

* (주요성과)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('19.6, 국토부 시범현장 체불근절), 퇴직부금 납입액 인상(4,200→5,000원, '18.1), 적정임금제·전자카드제 시범도입 등

- ☞ '17.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·보완 과제를 반영,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

* 관계부처회의, 노사정 협의체(일자리위 건설분과 TF) 등 10여차례 이상 의견수렴

2. 건설산업 일자리 현주소

- (현황) 낙후된 채용시스템, 빠른 고령화, 불법인력 등 문제 누적
 - 팀·반장,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취업경로(76.3%가 인맥을 통해 진입)
 - 빠른 고령화(50대 이상 52.8%) 및 외국인력 증가→ 산업기반 약화
 - 건설기능인력의 약 75%는 소득2분위 이하(추정), 체불액도 과다
 -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, 건설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 효과 미약

- (수급상황) 現내국인만으로는 인력부족→인력양성·신규 진입지원 필요

- (단기) '19년기준 내국인만으로는 20만명의 인력부족 추정
- (중장기) 증·감 요인이 혼재하나, 대체로 현재 수준에서 유지 전망

* 주택 등 수요↓, 자동화기술 발전 ↔ 노후·생활SOC 수요↑, 특성상 자동화 한계 등

3. 대책 주요내용

1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

◆ 걱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'전달체계' 개선

As-Is	To-Be
■ 폐쇄적·제한적 구직기회 ■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 미흡	■ 취업매칭·알선 지원 5만건/年('22) ■ 국내외 현장훈련 1천명/年 이상 시행

1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

○ (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) 건설현장 안전교육*을 통해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수단으로도 동시 활용

* 취업 전 교육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(4시간),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교육(2시간 이상) 등

-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·기간을 함께 명시

*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확인

- 건설사에 교육이수DB 대조·확인 권한 부여(공공현장은 대조검토 의무화)

- 향후 전자카드에 교육이수·외국인 등록정보를 포함, 통합관리

○ (불법하도급 취업 차단) 단속과 함께 제도권내 관리 강화

-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강화된 처벌 시행(참여제한, 3진아웃 등)

-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심·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 촉진

○ (우수고용업체 인센티브) 개별 사업별로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우수업체 우대

* 청년과 신규채용 정규직자수 등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실적가산('19.12 시행)

※ 합리적 외국인력 쿼터설정과 운용 개선, 적정임금제 제도화 병행

2]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

- (공적시스템 강화) 십·반장 등 인맥,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채용 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
 -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* 운영 등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 강화
 - * 인력수급 현황, 향후 예상 인력소요 등 공공건설 일자리 정보를 취합·공유·조정
 - 취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채용을 위한 선결조건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(14→7일)하는 혜택부여
- (채용질서 확립) 조합원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(19.7시행)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 조치, 업무방해 등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
 - 갈등해소센터를 통한 勞使, 勞勞간 분쟁관리와 이해조정도 지속

3] 인력육성 지원

- (우수인력 양성) 특성화고교(15개)를 통한 청년인재 정규직 채용, 교육기관(연간 8천명) 이수자를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채용(3개월 OJT)
- (수급계획 수립) 불법채용 차단, 스마트 건설기술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, 건설인적자원위원을 통해 인력수급·양성계획 수립('20.下)

2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

◆ 그간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·Eng.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·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

As-Is	To-Be
■ 건설기계 시장의 불법·불공정 관행 ■ 취약한 고령근로자 안전(재해율 3.6%)	■ 기계 불법영업과 임대료 착취 근절 ■ 고령근로자 재해율 50%↓('25년)

①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

-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,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(전대)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*하고 현장별 보증제 정착

* 임대계약시 건설기계 등록·검사여부 확인 및 자가용 기계 임대사용 금지,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건설사업자와 기계대여자로 명문화 등

② 건설Eng. 일자리 개선

- 과도한 업무,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*하고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**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

* 공정계약 지원센터 설치(건설기술관리협회), PQ 업무중복도 평가시 실무기술인 중복 여부도 평가 강화('19.4 지침개정) /

** 향후 입찰시 하도급사의 수행능력평가에 반영('20.상)

③ 고령·여성 근로자 보호

- 작업환경 개선*, 건강관리 지원** 등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,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, 성인지·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

* 미끄럼방지턱, 안내판 글씨 확대 등 / ** 연 2회 건강검진 지원 등

※ 세부계획을 종합, 「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('20~'24)」 고시

3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

◆ '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('17.12)' '산업안전보건법' 전부 개정('19.1 공표)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·보완대책 마련

As-Is	To-Be
■ 연간 임금체불 규모 2,500억원 상회 ■ 현장 안전사고 계속	■ 공공공사 체불근절 → 민간 확산 ■ 건설업 사망만인율 1.66→1.0('25년)

① 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보상

- (전자카드제)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*시키고 인식방식 개선(이동식, 모바일 등), 단말기 공급업체 확대(현 1개소) 등 추진

* 전자카드DB에 축적된 근로자별 근무시간과 계좌 정보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, 법 시행 이전 국토부·지자체 등 시범사업 확대 등

- (기능인등급제) 건설근로자가 **경력·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(직종별 4단계 분류)하고 제도 구체화***

*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→현장경력, 교육이수 및 자격증 정보 등 종합관리

** 건설업 등록기준, 입·낙찰제도, 현장배치기술자 규정 등에 기능인 등급제 반영

2 임금체불 근절

- (임금직불제 보완) 편법·관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시스템 개편
 - 세무운영기준 법제화(* 인력소개소 대리수급 금지, 건설사가 대금 등을 선지급 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등)
 -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기계 운전자 급여 구분 청구·지급
 - * 전체 영업용 기계의 62.5%를 1인 연명사업자가 운용(기계 1대 보유, 보유기계 직접 운전, 16만명)하여 대여대금과 운전자 급여를 관행적으로 일괄 지급
 - 건설사 부도·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 등 지급되도록 시스템 개편
 - *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(임금 포함)를 지불할 때, 노무비는 건설사 일반계좌가 아닌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송금
- (불법재하도급에 의한 체불 근절) 심·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 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·처벌 내실화
 -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 조사시 불법재하도급 필수 조사

3 안전한 일터 조성

- (현장이행력 제고)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 확대(現 120억→改 50억원), 패트롤카·건설안전지킴이 순찰 확대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 제고
- (현장안전 지원) 3대 보호구(안전모·안전화·안전대) 지원강화, 유해·위험 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경험·기능 요건 등 개선
- (스마트 안전기술) 정부R&D를 통해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(~'25)하고, 추락상황 등에 대한 체험형 VR 안전교육도 확대

※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 마련('19.12)

* 노·사·민·정 합동 '건설안전 혁신위원회'를 구성·운영하고 특히,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안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